「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5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2. **제안이유**

○ 식품분야 국내 유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경북본부 설립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2) 대 표 자 : 백현동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4) 출연금액 : 금1,027,000,000원

-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건립에 따른 건축비 분담금(시비 15%)

5) 출연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4 ~ 2028년

2) 위　　치 : 선산읍 교리 1376번지

3) 규　　모 : 부지 6,596.4㎡, 연면적 4,944.17㎡(지하1층 ~ 지상3층)

4) 총사업비 : 24,456백만원(부지 매입비 2,640백만원 제외)

5) 주요시설 : 업무 및 연구시설, 시제공장시설, 복지시설 등

구 분	연구 및 업무동	시제공장동	복지동	오폐수 및 위험물처리시설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지상1층	지하1층~지상2층	지상1층
연면적(㎡)	3,794.30	370.57	701.29	78.01

다. 연도별 투자 계획 : 24,4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7년	2028년	비고
계	24,456.0	14,671	6,846	2,939	
국 비	14,187.0	8,310	4,108	1,769	
도 비	3,850.5	2,385.5	1,027	438	
시 비	3,850.5	2,385.5	1,027	438	
한 식 연	2,568.0	1,590	684	294	

※ 재원분담 : 국비 60%, 도비 15%, 시비 15%, 한식연 10%

라. 기대효과

1) 식품산업 기반 조성 및 부가가치 창출 파급 경로 마련

2) 생산지원·기술이전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과 기술 상용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 육성 기반 조성

3) 지역 특화 식품기술을 개발하고 특산물의 상품화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 창출

4) 지역 농산물의 명품화(대체식품, 고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등)를 통한 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K-푸드를 선도하는 위상 강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2)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출연안은

-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위한 2027년도 시비 분담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장기 현안으로, 경북본부 건립을 통해 지역 특화 식품기술 개발, 생산지원 및 기술이전, K-푸드 선도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만큼 주관 기관의 공사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2028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상황을 세심히 점검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연구·지원 조직의 조기 안착과 함께 지역 기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